

#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138
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92. 9.

발 의 자 : 이석래의원의외 5명

## 1. 제 안 이 유

자치구의회 사무기구 기능 보강을 위하여 사무기구의 직제 변경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('92. 9. 3)됨에 따라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 2. 주 요 골 자

직제변경

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함

##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제2항 제3호 나목 내용중 “의회사무과”를 “의회사무국”  
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의회운영위원회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<u>의회사무과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다. (생략)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의회운영위원회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<u>의회사무국</u>……………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